

#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當面課題\*

徐明源

(前文教部長官)

우리나라 대학의 當面課題는 學園의 安定이 무엇보다도 火急하다. '民主化'의 激動에 따른 혼란을 통역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多元化社會, 高度產業社會, 開放社會, 福祉社會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劃一性을 지양하고 多樣성을, 閉鎖성을 극복하고 開放性을, 硬直性을 완화하고 柔軟性을 강조하는 일대 변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 머리말

격동하는 韓國에서 大學만이 조용할리 만무할 뿐만 아니라, 아마 大學이 가장 술렁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理想을 추구하는 青年들은 현실 불만이 많은 것이며, 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大學은 지금 未曾有의 難題들이 山積해 있다.

돌이켜 보건대, 日帝는 35년간 愚民教育政策을 써 왔으며 3·1運動 직후 韓民族間에 大學設立運動이 활발히 전개되자 마지 못해 京城帝大를 창립함으로써 '民立大學' 설립의 명분을 봉쇄했고, 해방 전까지 유일한 大學으로 韩民族의 大學教育의 念願을 窒息狀態로 끌어왔으며 겨우 19개의 專門學校를 認可했을 뿐이었다.

해방 후에 雨後竹筍格으로 大學이 탄생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나,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日人们이 독점했던 각계의 專門職을 화급히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다져가며 차근차근히 大學을 건설할 수 없었던 것도 또한 피치 못할 歷史的 狀況이었다. 한편으로는 人文崇尚의 傳統으로 內實을 기할 마음의 여유도 없이 우선 大學進學의 '榮光'을 萬人이 요구하기도 했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일 뿐 전국 준비에 따른 혼란과 정부 수립의 와중에서 6·25를 맞이했고 4·19와 5·16 등을 겪으면서 政治的不安이 그칠 새 없었으며, 經濟的 貧困은 극도에 달했었기 때문에 大學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大學을 政治的으로 이용하거나 간섭한 것도 大學

\* 이 글은 제10차 大學 總·學長 세미나('89.1.27)에서 발표된 基調講演의 내용임.

의 경상적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었던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런 여건하에서는 도저히 學問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는 기대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강력한 中央集權下의 行政的 統制와 摘選主義로 해를 거듭함에 따라 발전은 고사하고, 膨脹은 있었을지 몰라도 實的으로는 退步를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育英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営利를 도모하는 일부 學園까지도 있었다는 것은 매우 不美스러운 일이었으며, 社會的으로도 많은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大學 進學率은 美國 다음 가는 큰 성장을 보아 大學生이 배만 명을 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債權國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산업화의 공으로 간주하기 쉬우나, 실은 教育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교육다운 교육을 했더라면 더욱 좋은 성과를 이룩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나, 大學의 功獻이 과소평가 되었음을 滿天下에 인식시킴과 아울러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도 또한 결실한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갈등과 불평 불만이 大學社會에 있었던 것을 은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이 혁명한 처사도 아니다. 여기에 大學이 당면한 어려운 課題들을 分析하고 그 對策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쓰라림과 아픔을 견디어 내야만 할 것이다.

바야흐로 ‘民主化’의 絶糾는 날로 그 波高가 더해가고 있으며 ‘意識化’된 學生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影響力은 결코 낙관할 수 없으며 주락된 大學의 位相을 제자리에 再定立시켜야 함은 時代的 要請이기도 하다.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秀越性 추구를 통하여 頭腦集約的 社會를 창출해야만 국제 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는 現 단계이건만, 年年歲歲로 누적되는 再修生의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의 큰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 大學들에게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아마도 大學社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민 전체의 意識構造의 改革이 필요한 難問題일 것이다.

## 2. 民主化의 激動

民主化는 온 국민의 염원이며 발전의 필수 조건이지만, 지금 온 大學들이 큰 試練을 겪고 있는 것은 民主化의 美名下에 여러 가지 요구가 同時多發的으로 噴出하는 데서 오는 일대 혼란이며, 民主的 過程을 무시하고 때로는 부당한 요구까지를 일시에 관찰하려는 데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 1) 學生들의 慾求 噴出

大學의 主人으로 자처하는 學生들은 4·19精神을 이어받아 不義에 항거해 왔으며, 雜新體制를 반대했고, 6·29宣言을 이끌어낸 것도 그들의 ‘鬪爭으로 爭取했다’는 신념으로 學內 民主化로부터 시작하여 政治問題에까지 가담하며 民主化가 어느 정도 約束段階에 이르렀다고 보자, 이제는 南北統一問題까지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學生들이 끊기자 주장해 오던 非民主的 制度들이 근년에 와서 많이 시정되었다. 학도호국단은 學生會로 환원되었고 교련, 국민윤리 등의 國策科目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學生會의 운영에 있어서도 民主化・自律化의 진전이 있었다.

敎育이란 교실에서 敎科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課外活動을 통한 교육이다. 특히 大學社會에서의自治活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자치 활동이 지나치게 통제되었으며 指導敎授制는 교수에게나 학생들에게 매우 부자유스러운 제도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理念 씨를의 지도 교수는 指導라기보다는 ‘監視’이었으며 피차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어 師弟之間에 情誼마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問題學生의 처벌 문제는 敎育의이라기보다는 ‘political’으로 접행되었으며 死刑宣告와도 같은 脫학 처분이 타율적으로 감행되다가는 조용히 지나가면 情勢의 변동에 따라 英雄이 되어 復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기에 학칙의 권위는 여지없이 주락되었다.

知性人을 자처하고 自治能力을 과시하려는 大

學生들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경계하며 그들의 정당한 욕구도 묵살했기 때문에 자체 능력의 배양이 불가능했으며, 좌절과 의기소침이 지나치면 반항과 대화의 단절을 초래함은 물론意識化運動은 만연되고 地下運動으로까지 발전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은 明若觀火한 현상이었다.

정당한 참여의 기회가 봉쇄되고 통로가 차단되면 불법적 방법으로 權威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며, 혹여 논리와 불신 풍조가 횡행하고, 폭력도 불사하는 비민주적 행동으로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合法的으로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에 非合法的 수단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게 된다.

法과 秩序를 무시하고서는 民主社會를 건설할 수 없음은 상식에 속하는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學生들의 권한이 아닌 것까지도 요구 또는 간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學園을 民主化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파롬이다. 平和的 示威로 의사표시하는 것은 順理이건만, 시설을 파괴하고 象牙塔의 象徵인 총·학장실을 점거하는 따위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今의 作態는 이러한 일이 하나의 유형처럼 되어가고 있으며, 그 부당성에 대해서도 매우 둔감해지고 있는 것은 大學의 權威나 大學의 自治를 위해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傲慢의이고 非知性的인 행위를 감히 자행하게 되는 연유를 구태여 찾아본다면 불행한 우리 政治史의 餘波인지도 모르겠다. 정당하게 權座를 유지하지 못하고, 權威主義와 權力으로 權座를 유지하는 것을 추방한 民主精神이 大學의 總·學長職도 真理와 사랑의 象徵이라기보다 힘이나 權威主義의 상징으로 誤認케 한 느낌이 있다.

## 2) 教授들의 教權 確立 慾

學問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는 중세기 이후의 大學社會의 생명이며 궁지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理想을 실현하기 위하여 教育法 등을 제정하여 教授會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評議員會를 두어 民主的 大學行政의 여건을 마련하였었고 總長의 임기를 6년으로 하여 政治的으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였으며, 法定教授會에서 선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私學에서는 이사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나, 教授들의 意思가 존중되었으며 總·學長의 권한도 분명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함에 따라 歐美 大學制度가 韓國 大學社會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서서히 변질하여 教授會의 권한은 약화되고 評議員會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總長도 任命制로 변하고 임기도 4년으로 단축되었다. 私學의 이사장과 총·학장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지금도 그렇다.

과거 40여년간의 政治的·社會的 不安이 계속되는 동안 先驅의 後繼을 해 온 學生들을 통제내지 지도하기 위하여 大學은 他律의 運命을 면치 못했으며, 大學의 自治機能은 약화 일로를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教授들의 士氣는 위축되고 無力感, 挫折感, 無關心, 傷觀, 反抗의 태도를 갖기에 이르렀던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외부로부터의 통제와 간섭이 심해지자 이를 기화로 내부에서의 獨斷과 橫暴가 성행한 것은 또 하나의 불행한 현상이었다. 學園內의 非民主的處事が 政府의 指示를 빙자하여 필요 이상으로恣行된 예도 드물지 않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非民主的·非知性的 학원 분위기에 비판적·반항적 조류가 교수 사회에(특히 少壯教授層에) 흐르기 시작하더니, 때로는 學生들의 행동에 傷觀 또는 同調하는 경우까지 있었으며 民主化·自律化의 가치를 높이 들고 일어나는 학생층의 욕구가 분출되는 요즘에 와서는 教授들이 教權回復의 운동에 적극 가담하게 된 것은 自然之勢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隱忍自重의 한계선이 무너져서 怒濤와 같은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것이 昨今의 教授社會에 흐르는 기류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大學社會는 너무도 경직되고 너무도 폐쇄적이었기에 이제는 學校 運營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려는 것이 教授들의 요구이며, 일종의 反作用의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과거에 學園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더라면 이러한 요구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3) 職員들의 發言權

大學社會에서 가장 설움을 받는 地帶가 사무직원과 노무 직원들이다. 혹자는 이들을 大學의 '黑人들'이라고 부른다.主人를 차처하는 學生과 教授들의 特權的 姿勢는 때때로 職員들에게는 人權的 次元에서 문제가 될 정도이다. 例如 件件 차별 대우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신분이다. 적어도 그렇게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불친절하고 官僚的이고 부정과 비리의 상징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大學이라는 학문과 교육의 場에서 支援的 次元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공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건만 부당할 정도로 賤待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처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기애애하여야 할 學園社會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원활한 학교 운영에 많은 지장이 생기는 것은 결코 소망스러운 일은 아니다. 좀 더 너그럽게 좀더 豐意的으로 살펴 보면 이들도 教育的 차원에서 공헌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陰地에서 뚜렷히 일하던 이들이 民主化의 激流를 타고 노조 결성 등으로 제자리를 찾기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불행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合法的인 解決方法을 찾지 못하고,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나 이도 과거의 積弊에서 오는 索報일지도 모르겠다.

## 3. 財政的 隘路

大學 管理를 담당한 總·學長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財政的 隘路일 것이다. 學問의 많은 문제들이 財政만 풍부하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財政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許多하지만). 그러나 財政이 풍부하다 해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은 相對的 貧困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收入과 配分의 難題가 총·학장의 명석한 통찰력과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몇몇 특정 사학을 제외하고는 人件費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우리나라 大學財政의 현실이다. 시설비나 교육비의 비중이 좀더 높아야 함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선 인건비

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봉급에 만족하는 교직원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남의 떡이 커보이는지라 他校의 債給이 많다는 것을 探知한 교직원들은 봉급 인상을 주장하며 때로는 開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건비를 國庫가 담당하는 國立大學보다도 많은 私學의 봉급이 어떻게 해서 지불되는지를 알 필요도 없이 어느 大學에서나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또 學問에서의 相對的 待遇가 직종간·직급간에 또 하나의 난제이다. 각종 补職手當도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불평 불만의 씨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

需用費의 부족으로 교육다운 教育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어느 大學에서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나, 주어진 財政으로는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다. 教授의 研究나 學生의 福祉를 위한 需用費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 研究를 위해서는 無限定한 예산이 보장되는 선진국 대학이 부럽기만 하다.

施設費는 원칙적으로 財團에서 부담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랑곳 없이 學生들은 설립자나 재단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登錄金으로 운영하는 大學이라면 응당 學生들이 운영의 主導權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예산 집행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學校行政에 깊숙이 참여하는 學生들의 요구도 出資者的 권한을 행사하는 心算에서이다. 우리나라 大學의 원천적 취약점이 여기에 있다.

財源의 源泉이 登錄金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私學은 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學生定員 策定權이 문교부에 있고 登錄金도 정부에서 통제했던 과거의 처지에서는 私學 위축의 위기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國家가 못다 한 高等教育의 70%(대학교 77.8%, 학생 수 66.3%) 이상을 담당하는 私學에 대한 국고 보조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私立學校法은 統制를 주로 하고 支援을 소홀히 해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4. 膨脹政策과 그 逆機能

‘작은 좋은 大學’이란 말이 있거니와 우리나라에서는 큰 大學이 좋은 大學이라는 착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2년제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4년제 單科大學은 綜合大學校로 ‘昇格’하는 것을 학교 당국,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 욕망이 좌절될 때 폭행이 난무하는 珍風景이 일어나고 있다. ‘작은 좋은 大學’을 유지하라는 설립자나 학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주위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아 ‘願치 않는’ 종합대학교의 탄생까지도 있었다. 충분한 준비 없이 外華를 도모하다 보니 자연 內貧의 逆機能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 1) 綜合大學校에로의 渴望

綜合大學校의 장점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大學의 大學’인 基礎科學 大學을 중심으로 각 學問領域을 망라하여 眞·善·美를 추구하는 종합대는 學問의 연구나 專攻을 달리하는 학생 상호간의 접촉을 통하여 單科大學에서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교육과정, 각종 시설, 수많은 藏書 등등으로 폭 넓은 교양, 깊은 전공, 개성의 신장 등에 매우 유리한 學問의 殿堂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권위가 서고 世俗的인 羨望의 대상이 된다.

종합대학교에로의 갈망을 부채질하는 非教育의 요인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綜合大學校의 長을 總長이라고 부르고 單科大學의 長을 學長이라고 부르나, 英語로는 말할 것도 없이 兩者가 다 ‘President’이다.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사회에서는 綜合大學校의 學長(Dean)과 混用하는 경우가 많다. 명칭뿐만이 아니라 國立大學校 總長은 長官級 대우를 하는 데 비하여 學長은 次官級 대우를 하는 점에서도 綜合大 選好의 풍토를 계도화한 셈이다. 행정 기구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豫算面에서도 차등이 있어 綜合大學에의 갈망을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大學校는 ‘University’로 英譯되고, 大學은 ‘College’로 호칭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美國의 MIT는 ‘Institute’이지만 물지의 名門 대학교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校名만을 보고는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機械主義が 횡행하는 우리 社會에서는 總長과 學長의 儀典上의 대우에도 차별이 있어 公式席上에서 여러 가지 난센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制度의 矛盾이 格上을 추구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 2) 外華內貧의 不可避性

韓國의 現實에서 綜合大學가 賴유할 수 있는 榮光을 갖기 위하여 준비가 未備함에도 불구하고 학과를 증설하고 계열을 확대하여 大學校로 ‘昇格’하게 되면 규모는 커지고 기구도 확장되지만, 실은 여러 면에서 虛點이 노출되고 절적으로는 후퇴하는 경우도 非一非再한 것이다. 教授陣을 강화해야 하나 財政難으로 시간강사의 비중이 커지며, 大單位講義로 경비를 절약해야만 하며, 實驗器機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한 教育으로 形式만을 갖추게 되기 쉽다.

규모가 커지면 連身하기가 어려워진다. 관리 체계가 官僚化되고 異質集團을 통솔하자면 각종 規約과 制限이 필요하며 자칫하면 共同體 意識이 오히려 약화되기 마련이다. 情誼에 넘치는 학원 분위기는 사라지고 事務의 인간 관계가 늘어나며, 대학 전체의 이익에는 무관심해지고 교수들은 연구실이라는 閉鎖的 空間에서 牙城不侵을 표방하게 되기 쉽다. 專攻중의 전공에 몰두하는 교수들은 對話가 불가능해져 가고 있고 學際間의 結束이라기보다는 모자이크的 割據에서 蝦角之爭도 불사할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대규모 캠퍼스에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蔚藤, 不信, 不和의 雜音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곳곳에 산재했던 單科大學을 한 곳에 모아 綜合大學校를 건설함으로써 教育의 有機的 紐帶 강화와 經費의 절약을 도모한 大學校의 實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측 그대로 긍정적인 면도 많으나, 일면 예측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캠퍼스는 이미 思索이나 異想에는 부적당하고, 群衆 속의 孤獨을 느끼는 知識工場으로 화했으며, 점심을 때우기도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綜合的 教育課程 운영, 器機의 공동 이용, 圖書의 中央化 등의 기회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없어 교양과정의 經視, 專攻必須의 확대, 高級器機의 각 기관 확보, 專攻圖書館의 필요성 등을 고집하는 教授들이 있는가 하면, 教授와 事務職員을 문간할 수 있는 학생들은 師弟之間의 離를 갖출 수 있게 되고, 수시로 발생하는 대형 示威에 참여하는 學生들의 소속을 알 수 없는 教授들은 學生指導를 전적으로 本部 學生處에 일임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 先進國에서는 이미 캠퍼스의 綜合化를 깨고 分散化로 政策 方向을 시정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示唆를 준다.

## 5. 發展에의 挑戰

무수한 역경 속에서도 量的인 성장을 이루한 우리나라의 大學도 이제부터는 質的인 발전을 기약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절 높은 고급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國家社會에 이바지할 때가 왔으며, '教育職爭'에 이기기 위하여 일대 教育改革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엘리뜨教育과 大衆教育을 아울러 감당해야만 하는 時代의 要請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大學教育의 새로운 좌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 1) 民主化

知性人 集團인 大學의 운영을 民主化하기 위해서는 政策決定에 參與하는 기회를 教授들에게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人事, 教育課程, 施設 등에도 해당 위원회를 활용하여 大學의 閉鎖性을 탈피하여야 할 것이며, 教授들의 直選에 의한 代表機構(아카데믹 셰네트 등)를 통하여 중요 정책이 수립되고, 學年度末에는 總·學長의 教育白書를 통하여 연간의 大學 運營 실태를 공개하고, 전설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學生들의 自治活動을 활성화하는 것은 教育의 次元에서 바람직할 것이며, 학생 신분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운영에 참여시키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越權行爲에 대해서는 단호히 한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教育者로서의 임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 2) 教育課程의 刷新

大學은 自古로 보수적 경향이 농후하여 教育課程도 시대의 변천에 뒤지는 약점이 허다하였다. 현대와 같은 급변하는 社會의 要請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육과정의 쇄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知識의 폭발과 情報化·國際化 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教科가 도입되어야 하고 새로운 學科, 새로운 大學의 설립도 불가피할 것이다. 전공 위주의 교과 운영에 沦沒하다 보면 나무말을 보다가 산을 못보는 愚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教養教育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技術者나 知識人을 義成하기에 앞서 知性人을 落出하는 것이 大學의 사명임을 忘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大學도 이제는 大學院이 거의 보편화됨에 따라 大學院 education에 대한 關心이 크게 요청된다. 大學院 education課程의 학부 교육과의 연계는 물론이려니와 研究와의 연계에도 힘쓸 것이며 特殊大學院은 해당 직업 분야와의 진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教育方法의 現代化

教育方法 이전에 學事曆을 충실히 지켜야 할 것을 굳게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休謹이나 缺講이 많아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舊習은 이제부터는 용납될 수 없다. 학습의 분량도 너무나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도 單一制를 피하고 複數制를 시도할 만한 때가 왔으며 자기著書를 主教材로 쓰는 것은 偏見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삼가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이다.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注入式 강의를 하는 교수수가 많으며, 특히 人文·社會系列에서는 마이크를 이용한 大單位 강의를 하는 예가 허다하나 되도록 속히 止揚해야 할 것이다. 이런 수업 환경에서는 활발한 의견 교환이 불가능하고 큰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단위의 세미나식 授業을 많이 도입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建築面에서도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秀越性 추구를 위해서는 現代器機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尖端을 걸어야 하는 大

學이 產業體의 器機에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大學이 先導的 役割을 담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評價에 있어서도 多樣性과 邪力性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간 시험이나 기말 고사만으로 要式行爲만을 갖추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全學期를 통하여 수시로 평가함으로써 학문에 대한 자극을 주고 배움에 대한 희열을 느끼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4) 教授의 充員과 人事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취약점은 教授 1인당 學生數가 과다하다는 사실이다.

教授의 資質을 갖춘 人材는 충분하다. 博士學位 소지자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財政難에 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教授의 과다한 부담으로는 質的 向上을 기대할 수 없다. 과거 教育改革審議會에서는 國立大의 教授充員의 목표를 한 교수당 15 명 학생의 비율로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私學에서는 이보다 과중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제정이 허용하는 私學에서는 國立大學보다 先導的 시범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몇몇 大學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로는 専任教授를 최소화하고 時間講師를 最大化하고 있으나, 후자에게는 제한된 책임밖에 기대할 수 없으며 그들에 대한 대우는 社會問題化될 정도로 薄待遇하고 있음은 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의 책임 시간도 과다하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도저히 수준 높은 教育이 불가능하며 발전하는 학문을 따라갈 수가 없다. 助教의 數도 지나치게 적다. 그렇기 때문에 教授內容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적당히 시간을 채우고 말게 된다. 助教는 장차 학문의 후계자가 될 요원이기 때문에 학문 이외의 잡무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教授가 研究를 소홀히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骨董品이 되고 만다. 연구 업적을 내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도태당하기 마련이다. 능력 있는 教授를 授業에만 동원하면 學園의 發展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安息年制度 등으로 자질 향상의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硕士敎授制가 이미 실시되고 있어 연구 능력이 월등한 學者에게는 수업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 그 大學이나 國家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의 질은 教員의 質과 정비례한다고 한다. 大學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는 교수의 人事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政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大學에서나 自己大學 출신들을 채용하기 쉬우나 이 경향이 지나치면 學問의 近親相姦의 危害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경계하여야 한다. 어느 大學에서는 일정한 比率을 경하여 이危險性을 피하기도 하고 졸업 후는 반드시 他校에서 實績을 쌓은 연후에야 母校에서 채용하는 제도까지 쓰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示唆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學緣, 地緣 등의 弊端을 시정하기 위하여 公開採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자에 와서는 채용자는 이미 內定해 놓고 둘러리를 세운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물론 공개 채용제의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人材를 公募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이 제도를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教授再任用制를 시행한 후 그 본래의 목적과는 背馳되는 현상이 나타나 政治的으로 희생되거나 私感으로 도태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 제도의 폐지가 심각하게 거론되어 왔으나, 그렇다고 한번 임명되면 停年까지 보장되는 것도 결코 좋은 제도는 못된다. 여러 선진국의 예와 같이 助教授까지는 契約制로 하고, 副教授부터는 停年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현명할 것이다. 그리고 4 개 직급간의 일정한 비중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나, 원활한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深重히 考慮에 두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그동안의 落下傘式 人事의 폐단으로 오증에는 直選制로 총·학장을 선출하는 열풍이 불고 있으나, 이 또한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은 明若觀火하다. 특히 內部에서만 機關長을 선출하는 경향은 그 학원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수 년을 空

席으로 두고라도 世界的으로 長을 탐색하는 여유를 갖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기간의 試行錯誤를 경험한 연후에야 냉정을 되찾고 큰 안목에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이 예상된다.

### 5) 施設의 內實化

우리나라 大學의 通弊은 건물은 웅장하지만 내부 시설은 한심할 정도로 빈약하다. 外華內貧의 汚名을 듣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하여 외국의 大學들은 교문이나 건물은 초라 하지만 圖書나 施設이 매우 충실히 것과는 좋은 대조이다. 體面을 중시하는 韓國文化의 일단을 상징하는 듯하다.

한편, 재한된 財政에 원자현미경과 같은 高價의 器機를 각 大學, 각 學科마다 요구하는 병폐를 속히 지양하고 공동 이용 체제의 확립이 절실하며, 학술 잡지의 이용에 있어서도 같은 풍토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학생회관, 기숙사, 식당 등의 厚生福祉 시설도 겸차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公園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大學의 운동장도 온 學生의 保健을 위해서 필요불가결의 시설이다. 혼히 외국 대학에는 운동장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實情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는 주차장까지도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하여 캠퍼스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 6) 學生定員과 入試制度

學生定員도 궁극적으로 大學에 一任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大學들이 自律 실적을 올려야 할 것이며 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스스로의 統制가 입증되면 정부의 통제나 간섭이 그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유관한 고급 인력의 양성은 人文·社會系列 대 自然系列이 40:60으로 서서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적 財政的 부담이 많은 자연계열은 國立大學이 주로 맡고, 私學에서는 주로 인문·사회계열을 맡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學問의 學生定員은 총·학장에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自量權을 조속히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入學試驗은 되도록이면 속히 대학에 환원시키는 것이 正道이다. 학교의 學生選拔權과 학생의 學校選擇權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시 과목, 선발 시기 등도 점차 大學에 일임하면 고등학교에서도 여기에 따른 적절한 指導方法이 생길 것이다. 입시 과목과 출제 경향이 고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도 入試制度의 正常화는 시급한 문제이다.

大學의 質的 向上来 위해서는 수준에 미달되는 수험생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嚴選의 刃斷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대학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 7) 教育財源의 確保

教育의 結實은 教育 投資와 정비례한다. 값싼 교육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人材를 배출할 수가 없다. 위에서 여러 가지 發展에의 挑戰策을 논했으나 거의 모두가 재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의욕과 의지가 있어도 재원 부족으로 前進이 制御되고 있을 때이다.

국방부 다음 가는 방대한 文教部豫算이지만 인건비와 보통교육비를 제하면 과연 高等教育에 얼마나 投資할 수 있는가? 정부 총 예산의 20% 내외의 예산이며 GNP의 3.34%를 차지하지만 미미한 예산 규모이다. 私學에는 거의 지원이 없고, 통제단이 있어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는 비판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국토 양단의 비극 때문에 國防費가 GNP의 6%를 차지하고 있어 政府에서도 妙策이 없다 한다. 南北統一의 필요성은 여기에서도 결실히 느껴진다. 教育의 효과는 완만하기 때문에 언제나 뒤로 밀리는 것이 東西古今의 현상이지만, 채권국으로까지 발전한 우리나라에게 이제는 교육 투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고 본다.

教育改革審議會는 재정 확보책으로 前年度 文教部豫算의 0.1%를 증액하여 GNP의 4.7%에 도달할 2001년까지만이라도 획기적인 단안이 있기를 전의하였다. 이것만으로는 보통 교육의 정상화가 불가능함으로 教育公債의 발행

도 전의하였다.

사학 재원의 유일한 원천이 學生 納入金임을 감안하여 學生定員의 自律化와 納入金의 自律化가 요구된다. 정부 예산으로 私學 支援이 요청됨은 私學의 公共性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며 '私學振興金庫' (가칭)의 설치·운영도 절실하다. 국립대학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特別會計도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없는 大學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政府는 大學에 대한 研究開發費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學校教育用 力料金 引下 등은 다소나마 재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 안보 및 사회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할 때 政府로부터의 公共財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게 되었다. 寄附金에 대해서는 損費處理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총·학장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기부금 유치 활동일 것이며, 얕어진 기부금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寄附金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8) 大學間 協同體制의 確立

무릇 협동은 경쟁보다 어려운 것이지만 수백의 大學이 있으면서도 大學間의 協同體制가 미흡한 것은 自他가 公認할 것이다. 人的 자원이나 物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大學들은 그 필요성이 절실히 전문, 權威와 體面 때문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高等教育도 역할 분담이 있어 마땅하다. 大學院中心大學, 學部center大學, 技術center大學 등으로 각기 역할이 다르고 또 달라야 할 것이다. 같은 역할을 맡은 大學들 사이에도 동일한 學科들을 모두가 具備할 필요는 없다. 講座의 개설도 그럴 것이며, 施設도 重複할 필요가 없고 財政的能力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大學院教育은 協同體制만 원활하면 폐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인접 대학간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앞으로 더욱 확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같은 大學이 많은 것보다 각기 특색 있는 大

學으로 성장·발전하여 異質的 功獻을 하는 것이 多元化 社會에서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地域社會에 맞는 教育을 위해서도 地方大學의 特性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都鄙大學間의 協同 또한 유익할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遠距離에 있는 大學間에 圖書貸出制度(inter-library loan system)를 활용하여 文獻의 유무를 相通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 大學들은 外國大學과의 姉妹結緣은 비교적 활발하나 國內 大學間은 오히려 不振함은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닐 것이다. 教授의 교환, 學生의 교환, 文獻과 器機의 상호 대출 등으로 많은 난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9) 產·學·研 協同體制의 強化

理論과 實際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다. 產業界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實社會에서 요청되는 것을 大學이 해결해 주고, 한편 大學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산업체가 示唆해 주기도 할 것이다. 研究費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도 產學協同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각종 研究機關과의 협동 또한 같은 맥락에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大學은 實社會와는 유리된 象牙塔的 存在로서 고고한 태도만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實社會와의 접촉을 통하여 研究와 奉仕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6. 結語

우리나라 대학의 當面課題는 學園의 安定이 무엇보다도 火急하다. 民主化的 激動에 따른 혼란을 흥역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을 위한 전통인 것이다. 多元化社會, 高度產業社會, 開放社會, 福祉社會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划一性을 지향하고 多樣性을, 封鎖性을 극복하고 開放性을, 硬直性을 완화하고 柔軟性을 강조하는 일대 변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배움에 굽주렸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大學의 量的 膨脹에 주력했었다면, 마치 보리고개를 극복한 지금에 와서는 음식의 質을 요구하게 되

오늘날 実定法의 규정이 教育公務員을 포함하여 國家公務員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私立學校法에 의거한 私學教員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國·公·私立을 막론하고 교원의 勞動運動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國家公務員法 제6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集團行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교원을 포함하는 모든 公務員에 적용된다. 그리고 私立學校法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國·公立學校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5조)고 하였다. 따라서 実定法의 규정은 모든 教員에게 勞動組合을 통한 集團行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일부 교사들이 이와 같은 実定法의 규정에 대하여 法理論上의 異議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와 같은 규정이 憲法의 규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基本權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와 같은 基本權을 法律에 의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違憲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公務員들의 集團行動 금지 조항은 그것이 公法學者들 사이에서 다소의 이론적인 논쟁점이 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明文 規定으로서 우리의 사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받아들인 것으로 적어도 오늘의 시점에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앞으로 이와 같은 実定法 규정이 그대로 존속된다는 철칙은 없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며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教員勞組의 결성이 明白한 実定法 위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점에 관해서 일부 교원들이 그것은 惡法이며 民主社會의 國民 基本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기본 질서, 교육의 기본 질서로서 오래도록 내려왔고 모든 국민이 당연시해 온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違憲이니 惡法이니 하여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 국가 사회의 모든 질서는 혼들릴 것이다. 그와 같은 중대 사항에 관한 해석은 憲法裁判所나 기타 大法院 判決 등을 통한 公式的인 통로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지거나 아니면 立法府의 法律 改正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로서 제조명되기까지는 그대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날 우리나라에서 이 점에 관한 法律 해석에 있어서 다소의 혼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960년 4·19 직후 教員勞動組合이 결성되었을 때 法務部의 有權的 解釋이 혼들리고 제일선 교사들에게 法理論上의 혼돈을 야기시킨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1961년 5·16 직후에 제정된 ‘教育에 관한 臨時特例法’에서 “교원은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다 직선적으로 규정하였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1963년 말에 개정된 教育公務員法에서도 집단 행동 금지에 관한 國家公務員法의 규정을 교육 공무원에게 준용할 것임을 거듭 明文化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후의 法 改正을 통해서 그와 같은 重複된 규정을 없애고 現行과 같이 된 것이다. 現行 法 규정이 교육 공무원이나 私立學校 교원에게 집단 행동 금지를 明文化하고 있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요컨대 法理論上 노동 3권을 국가 공무원이나 교원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法律의in 제한을 가하는 문제에 관하여 일부에서 논란이 있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多元化社會에 있어서 學問의 自由를 전제로 하는 이론상의 논쟁에 불과하다. 마치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원 노조를 금지하는 実定法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実定法이 엄연히 교원의 노동 조합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法律條項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 한에 있어서 実定法의 效力은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法律의in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敎員들이 노동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法規面에서의 시비를 떠나서 교육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교원 자신에게 다소의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自制하고 또 배격하는 것이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敎員勞組運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필칭 '참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원 노조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제까지의 우리 교육은 非理와 虛偽에 가득찬 것이었다. 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해서決定權을 가져야 한다.

② 지금까지의 학교장이나 행정가들은 權威主義과 獨善에 가득 차 있다. 그들에게 교육의 주요 결정권을 내맡길 수는 없다.

③ 기존의 교직 단체는 정부의 어용 단체에 불과하였으며 무능하였고 교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교권의 신장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들과 결별하여 노동 3권의 보장을 스스로 쟁취하여야 한다.

敎員勞組運動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學校長의 직접 선출제, 교무 회의의 의결기구화, 노동 3권의 보장, 참교육의 실시 등 다양한 전제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할 여유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과 전제는 매우 위험한 것이며 잘못하면 우리나라 教育秩序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전제를 분석·비판해 본다.

① 이제까지의 교육에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非理도 있었고 잘못

도 있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의 교육이 100 퍼센트 잘못되었다거나 우리나라 교육이 썩어 빠졌다고 단죄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요 독단이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들이 애써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송두리채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사고이며 발상이다. 그것은 그와 같은 極端論者들의 共同責任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들이 절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영원한 과제이며 일부 교사들의 과격한 革命的手法으로는 시정이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란 본래 真理와 善을 향한 끊임없는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착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서 개인의 능력을 절진적으로 신장·발전시키는 과정이 곧 교육이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조건을 영구히 재생하는 수단과 과정이며 그것은 革命的手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② 교원 노조를 주장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것을 주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民主社會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편파된 主義·主張을 내세우려는 과격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끼여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固定된 認識의 틀, 편파된 判斷과 평가의 기준,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을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그대로 관철하려는 行動方式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 국가 사회의 教育權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조차 개의하지 않는다. 극단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조차 짓밟아도 교사들의 교육권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자기들만의 주장이 절대 옳다고 믿는 나머지 다른 대다수의 침묵하는 교사들의 동조를 과장 선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서슴치 않으려 한다. 극소수의 주동자들은 교육적인 입장을 떠나서 교육을 통한 社會의 革命的인 변혁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좋은 예가 학생들에 대한 意識化教育

도 교사들의 특권인 양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③ 이제까지 우리나라 教育行政이 우리의 政治體制와 政治文化 속에서 그 영향을 받아 中央集權의·權威主義의 양상을 띠었음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 발전 단계에서 그 나름대로 順應能의인 역할을 한 일면이 없지 않았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에 그와 같은 中央集權과 權威主義은 청산되어야 할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權威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 노조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교육에서의 교육 행정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교육의 기준 절서를 무너뜨리는 방법의 하나로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정적인 잘못이며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④ 교직 단체가 지난 날 利益團體와 壓力團體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인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御用團體로 매도하고 교원의 권익 옹호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더구나 교직 단체가 專門職團體로서의 특성을 견지하면서 평교사들의 참여의幅을 넓히고 교육 정책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고 定款을 개정하고 教員地位法의 제정 등 새로운 쇄신을 기하고 있는 점도 정당히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노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교직 단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것이 참교육의 이름 아래 추진되니 딱하고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⑤ 교원 노조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참교육, 교육의 民主化 등의 名分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교육 절서를 완전히 뒤엎는 일을 서슴치 않을 뿐더러 자라나는 青少年들에게 宪定法의 무시, 기존의 權威에 대한 不信과 항거, 극한 투쟁 등의 방법에 의한 선동과 분열도 불사하는 식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겨주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량한 교사들이 그 진상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교원 처

우에 대한 불만, 판료 독선에 대한 반발 등 혼존하는 불만의 돌파구로서 교원 노조에 동조하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의 교원 노조 운동이 그 순수성을 저버린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듯한 오늘의 추세는 위태롭기 짜이 없는 일이다. 순진한 어린이들이나 青少年學生들에게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불신하며 기존의 교육 절서를 무시하도록 말과 행동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教育의 인가 우리 모두 自問自答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⑥ 교육은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젊은 世代에게 사랑, 신뢰, 질서, 근면, 힘등 등 올바른 價值觀을 심어주고 그들을 人格的으로 견실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길러 주어야 할 막중한 작업이요 활동이다. 그런데 '참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본 취지와는 동떨어진 미움과 분열의 씨를 뿌리고 극렬 투쟁의 방식을 垂範하는 결과를 빚게 한다면 國民教育의 장래를 위하여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教員勞組가 국민적인 뜻에 의하여 遏止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할지도 모른다.

사실 教員勞組의 결성을 둘러싼 오늘의 파동은 교육계를 엄습한 태풍의 눈이며 일찍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교육 危機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 4

교원 노조를 둘러싼 是非가 교육계의 논쟁을 넘어서 社會的 論爭의 하나로 비화하고 있음은 그것이 社會的인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주요 문제가 곧 사회의 주요 문제가 될 수 있음은 거의 모든 가정의 子女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교육이 沢社會的·澤國民的 관심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이 고도의 公共性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① 우리 社會도 이제는 成熟한 民主社會로 발전하고 있다. 교원 노조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저마다의 價値觀에 따라서 자유로이 교원 단체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多元的 價値를 인정하는 民主社會에 있어서 교원 노조를 法으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

(2) 교사도 하나의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있으며 교직도 하나의 勞動職으로서 노동 3권을 인정 받아야 한다. 교사들이 노동 3권의 보장을 받은 노동 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자유에 속한다. 그것을 法으로 막거나 정책으로 제한하는 것은 權威主義의 정치 체제의 유산이다.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문제시된다면 단체 결성권과 단체교섭권만이라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그 자체의 논리로 보아서 일견 상당한 道理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세밀히 따져 본다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歷史的 現實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우리 社會에서는 歷史的으로 儒教의 倫理觀이 지배해 왔기에 교사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동일시하는 견해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君師父一體의 사상은 그것이 전통 사회의 가치관으로서 오늘의 사회 현실에는 부합되지 않는 일면이 있다 할지라도 교사를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관점에 대하여는 심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진 사회에 있어서 교원들의 勞動職觀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② 우리 社會는 8·15 이후 南北分斷과 左右間의 思想分裂을 겪었으며, 노동 운동이 左傾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사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깊이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교원 노조 운동이 그와 같은 경향을 떠지나 않을까 하는 사회적 의구심은 줄곧 지속되었으며 지금도 사회의 일각에 남아 있다. 사실 우리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그와 같은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 조합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교사들의 경우 교원 노동 조합 운동이 갖는 한계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③ 사회의 通念上 우리나라 교사들은 師道의 실천이 기대되고 있다. 그것은 師弟同行, 率先垂範, 物質보다 精神의 강조 등 여러 가지 덕목을 강조하며 비단 학생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師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集團行動을 한다거나 犯法行爲를 하는 것을 부적절하고 부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례이다. 교사들의 무질제한 행위는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社會가 教員勞組를 社會的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는 데 교원 노조가 적어도 당분간 우리 社會에 定着되기 어려운 근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社會의 歷史的 現實로 보아서 교원 노조 운동은 時期尚早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南北統一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GNP 2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 사정은 다소 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의 社會를 일부 先進社會와 완전히 같은 수준의 先進開放社會로 인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의미에서는 實定法 규정이란 우리 社會의 通念을 明文化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

교원 노조 운동을 국제적 시야에서 고찰해 볼 때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대답도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교원 노조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교원 노조 운동은 광범히 인정되고 있으며 교원 노조는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과 견해에 대하여 皮相의 관찰자는 그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세밀히 관찰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①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교원 노조가 광범히 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高度의 分權體制로 말미암아 교원의 근무 조건이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며 교사들은 노동 조합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처우 개선, 근무 조건의 개선, 교권의 신장을 도모하여 왔다는 특징을 가진다. 같은 선진국이라도 西獨에서는 교사의 근무 조건을 法規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그 과정에서 교원 단체의 협의를 제도화하고 있는 등 점근 방법을 달리한다. 日本의 경우에도 교원 노조는 團體結成權만 인정되고 團體交涉權이나 團體行動權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아시아 여러 나라에 있어서 노동 3권이 보장된 교원 노동 조합을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日本의 경우 美軍政下에서 1947년 日本敎員組合이 발족하였다. 그러나 현재 점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平敎師의 加入率이 70~80% 선을 넘어선 때가 있었으나 점차 5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新規加入率은 3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 會員數는 절정에 달했을 때에 비하여 20만 명 정도가 줄어 들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日本의 교육을 황폐화시킨 主犯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교사들로부터도 점차 外面을 당하고 있으며 法的으로도 단체 교섭권이나 행동권 등을 부여 받지 못한 채 일본의 文部省이나 학교 관리직과도 反目만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아시아의 여러 나라 가운데 교원 노동 조합이 인정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노동 조합이라는 명칭이 文化的으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 등이 모두 그러한 경우이다. 이들 여러 나라에서는 英國의 전통에 따라서 교원 노동 조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우에도 단체 행동권은 고사하고 단체 교섭권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다. 우리의 경우에 일부 先進國의先例를 따라서 노동 3권의 보장을 받는 교원 노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그와 같은 주장이 광범한

사회적 인정을 받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④ 국제적 시야에서 볼 때 교원 노조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은 천차만별한 셈이다. 나라마다 전통이 다르고 사회적 환경이 다르며 인식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오늘대 敎員勞組에 대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대응 방식을 살펴 볼 때 우리나라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敎員勞組를 不法化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해괴한 사실이 아니며 反民主의라고 낙인을 찍거나 未開發 段階의 특징이라고 몰아 붙일 일도 아니다. 우리의 경우 그것은 우리의 歷史的 現實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적 시야에서의 觀照로 미루어 보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6

敎員勞組 결성의 적부를 둘러싸고 우리 教育界는 물론 社會 전체가 격심한 논쟁에 휘말려 있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歷史的 轉換期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제 教育 法規의 개정이 교육계는 물론 政治界的 시급한 요청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法秩序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가 일부 무너지고 있으며 새로운 法秩序는 아직도 定立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法秩序가 어떻게 定立될 것인가는豫斷을 불허한다. 그러나 우리의 歷史的 現實과 教育的인 대응의 필요성은 물론 국제적 시야에서 보더라도 노동 3권이 보장되는 敎員勞組의 성립은 전혀 기대할 여지가 없다. 필자의 管見으로서는 단체행동권이 배제된 노동 2권도 전문직 단체로서의 教育會를 전제로 할 때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團體交涉權의 인정과 仲裁委員會의 제도화 등을 물자로 하는 敎員地位法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